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

[시행 2021. 3. 31.] [국립부곡병원예규 제315호, 2021. 3. 31., 일부개정]

국립부곡병원(서무과), 055-520-2511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(이하 "부곡병원"이라한다)의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병원 소속 내부위원과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(외부위원) 2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국립부곡병원 재무관(기획운영과장)은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회의 위원장이 되고, 위원은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단 내부위원은 그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.

③ 외부전문가(외부위원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, 간사는 세부사업관리자(재정팀장)로 한다. (단, 사업 변경 등 세부추진사항은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할 수 있다.)

제3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심의회의 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1.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,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
2.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, 물량,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
4. 일용직,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
5. 자산취득, 물품구매,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
6. 재정집행 실적 점검,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 점검 회의에 관한 사항
7.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·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
8.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인건비, 법정경비,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
2.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,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 (심의기준) 심의회의 안건은 다음 기준에 다라 심의하여야 한다.

1. 합법성 : 예산·계약·회계 등 관련 법령·규정·지침에 부합
2. 효율성 : 성과 달성에 대한 투입예산 절감, 투입에 대한 최대성과 달성
3. 합목적성 : 여건변경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산집행 당시의 상황·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성
4. 보충성 : 예비비,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할 불가피성

제6조 (운영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부서에서 심의요구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.

④ 사안의 긴급,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, 심의목록(별지 제2호서식) 등을 작성·비치하고, 심의 의결서(별지 제3호서식)를 보존·관리한다.

부칙 <제315호, 2021. 3. 31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